

연천군 하수도공기업 설치 조례 [2005. 7. 7]

[조례 제2708호]

일부개정 2018. 10. 30 조례 제3517호
(제명개정)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하수행정의 건전한 발전과 공중위생의 향상에 기여하고 공공수역의 수질을 보존하기 위하여 「지방공기업법」 제5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을 설치하고 그 운영과 조직에 관한 기본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제2조(사업의 범위)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하수도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1. 공공하수도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
2. 하수종말처리장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
3.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업 및 그에 부대되는 사업

제3조(사업구역)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(이하 “하수도사업”이라 한다)의 사업구역은 연천군 행정구역 안으로 한다. 다만, 연천군수(이하 “군수”라 한다)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할구역 이외의 구역도 포함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30>

제4조(관리자의 지정) ① 「지방공기업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7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의 업무를 관리·집행하기 위하여 관리자를 둔다. <개정 2018. 10. 30>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관리자는 맑은물관리사업소장이 된다. <개정 2018. 10. 30>

제5조(조직) 관리자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정원의 범위에서 필요한 하부 조직의 설치와 하수도사업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한 전보를 군수에게 건의 또는 제청할 수 있다.

[전문개정 2018. 10. 30]

제6조(관리자의 책임)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른 변상책임의 한계와 결정은 일반회계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제7조(기업관리규정) 관리자는 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기업관리규정을 제정할 수

있다. <개정 2018. 10. 30>

제8조(특별회계의 설치) ① 연천군의 하수도사업은 법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수입으로 그 지출에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② 제2조 각 호의 사업은 이를 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통합한다.

③ 특별회계의 세입은 하수도 점용료·사용료·일반회계 전입금 및 기초세입으로 한다.

④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관거·하수종말처리장 설치 및 유지관리, 상환원리금 및 그 밖에 하수도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제9조(회계연도)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회계연도는 일반회계의 회계연도와 같다. <개정 2018. 10. 30>

[제목개정 2018. 10. 30]

제10조(일반회계 부담) 「하수도법」 및 그 밖의 관계 법령과 연천군의 조례 또는 규칙에 따라 시행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경비는 연천군일반회계(이하 “일반회계”라 한다)가 그 경비를 부담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1. 「지방공기업법 시행령」(이하 “영”이라 한다) 제5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의 규정에 따른 경비
2. 군정의 일반목적에 따라 감면되는 요금
3. 그 밖에 그 성질상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부담할 수 없는 경비

제11조(출자) ① 일반회계나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출자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30>

②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의 출자금으로 회계처리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③ 제1항에 따라 출자를 받은 경우 이익 상황을 고려하여 예산으로 전년도 이익금의 일부를 출자한 회계에 납부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30>

④ 제3항의 규정에 따른 납부 또는 적립을 위한 금액 계산은 하수도사업의 자본금총액에 대한 출자액의 비율에 따르고 해당 연도 이익금의 10분의 1 미만을 그 비율에 의한 계산 대상금액으로 한다.

제12조(재정지원)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하여 무상으로 재정지원을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1. 제11조에 따른 전입금
2. 비상재해 등 특별한 경우의 재정보조

제13조(지방채) ① 법 제19조에 따른 지방채는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부담으로 발행한다. 다만, 필요에 따라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 그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30>

② 제1항의 경우 그 지방채에는 원리금의 지급을 부담하는 회계의 명과 이를 보증하는 회계의 명을 표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제14조(예산의 탄력규정) 법 제27조의 규정에 따른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 한한다.

1. 해당 지출의 비목 예산의 잔액이 없고 전용할 다른 예산이 없는 경우
2. 의회에 상정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
3. 그 지출로 인한 수입이 해당 지출이 있는 사업 연도에 실현될 것이 확실한 경우

제15조(잉여금의 처분) 결산상 계상된 이익금으로 전년도의 결손금을 보전하고 남은 잔액은 다음 순서로 처분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1. 법의 규정에 따른 이익적립금
2. 미상환 차입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다음 연도 상환액 상당금액의 감채적립금
3.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따른 처분을 하고도 잉여금 잔액이 있는 경우에 제11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배당납부금
4. 잉여금에서 제1호 내지 제3호를 처분하고도 잔액이 있는 경우 그 10분의 8을 건설개량적립금으로 적립하고 그 잔액은 미처분 이익잉여금으로 정리한다.

제16조(회전기금의 설치) ① 「하수도법」에서 정하는 공공하수도의 설치 업무는 회전기금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18. 10. 30>

② 회전기금의 관리책임자는 하수도사업의 관리자로 한다.

제17조 삭제 <2018. 10. 30>

제18조(회계처리 상황의 보고) 법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가 하수도사업의 회계

처리 상황을 군수에게 보고할 때에는 시산표 및 자금운용보고서와 함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1. 가용 자원명세서
2. 「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」에 따른 원가계산서
3. 예산 집행보고서
4. 시산표와 주요계정명세서
5. 그 밖에 필요한 사항

[제목개정 2018. 10. 30]

제19조(업무상황설명서의 제출과 공표) ① 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상황설명서를 매 사업 연도의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업무상황은 같은 연도 8월 31일까지,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업무상황은 다음 연도 2월 28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1. 사업의 현황
2. 경리의 상황. 다만, 6월 보고인 경우에는 시산표와 예산 및 자금운용보고서에 한정한다.
3. 그 밖에 하수도사업의 경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관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
② 군수는 관리자가 제1항에 따른 업무상황설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연천군이 발행하는 군보 또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에 따라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. <개정 2018. 10. 30>

[제목개정 2018. 10. 30]

제20조(회계공무원의 관직 지정)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관직 지정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[전문개정 2018. 10. 30]

제21조(자문기관의 설치) ① 하수도사업의 원활한 운영과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관계 인사의 자문을 받기 위하여 자문기관을 둘 수 있다.

② 제1항의 자문기관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제22조(시행규칙)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.

부칙

- 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(경과조치) 이 조례 시행 전에 이미 행하여진 결정·처분 및 그 절차나 행위는 이 조례에 의하여 행하여진 것으로 본다.
- ③(자본금) 이 조례 시행 당시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개시 대차대조표상의 자본금을 하수도사업특별회계의 원시자본금으로 한다.
- ④(자본금 수정) 이 조례 시행 이후에 있어서 시행일 현재의 자본금으로 계상되어야 할 사항이 발견되었거나, 자본금에서 제외하여야 할 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자본수정사항으로 하여 원시자본금과 분리 표시한다.

부칙 <2018. 10. 30 조례 제3517호>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